

[의료기기쟁점] 의료기기 총판의 독점판매계약 종료 후 보상청구 + 포기 합의서의
효력여부



1. 사실관계

공급자 외국회사 대형의료기기 업체 vs 판매자 한국총판업체 독점판매계약

계약해지 + 판매점 보유 재고인수 + 소액의 인센티브 금액 지급 + Final
Agreement (termination agreement) 작성 - "더 이상의 아무런 보상청구권은
없다"는 취지의 합의서

BUT 한국업체 총판에서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외국업체에 대해 ICC 중재 신청 + 계약조항 - 중재지 한국, 적용법 한국법 + 주장요지: 상법 제 92 조의 2 의 대리상 보상청구권 유추적용 + 추가 보상청구

2. 쟁점 및 당사자 주장요지

한국총판 주장요지

- (i) 총판은 실질적으로 대리상과 같은 지위 + 상법 제 92 조의 2 유추적용되어야 함.
- (ii) 상법 제 92 조의 2 는 강행규정 + 당사자 합의로 보상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.
- (iii)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은 계약상 권리로서 대리상 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이므로, 계약서 12.5 조(계약종료 이후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기한다는 내용)에 의해 배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.

공급자 외국회사 주장요지

- (i) 판매계약 + 상법 제 92 조의 2 대리상 아님 + 상법 제 92 조의 2 의 유추적용 불가
- (ii) 대법원 판례의 유추적용 요건 충족하지 못함 - 판매점은 계약종료 직후에 공급자의 경쟁사와 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기존에 자신이 획득한 고객망을 활용하고 있기에 판매점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 공급자에 현존하지 않는다.
- (iii) 독일상법 제 89 조의 2 가 보상청구권의 사전배제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반면 우리 상법에서는 해당 법문 없음. 보상청구권의 강행법규성 배제 취지로 해석됨
- (iv) 상법 제 92 조의 2 가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계약종료시에 보상청구권을 사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함.
- (v) 계약종료 후 final agreement 로 사후 포기한 것임.

3.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 판정 요지

보상청구권 유추적용 요건으로 3 가지 제시

(i) 판매점이 공급자의 영업조직에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.

(ii) 판매점이 계약해지 후 공급자에게 고객정보를 양도할 의무를 부담해야
한다.

(iii) 공급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의 재판매가격을 통제해야 한다.

중재판정: 본건은 한국 판매점의 위와 같은 유추적용 요건 불충족 + 보상청구권

사후 포기 인정 → 청구기각

계약종료 후 당사자가 더 이상 양자간 아무런 보상/배상도 없다고 합의한 것은
이미 상법 제 92 조의 2 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상태에서 더 이상
아무런 보상도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상법상의 보상청구권이
허용되지 않는다고 봄.

설령 상법 제 92 조의 2 가 강행규범이라는 입장에 따르더라도 분쟁발생 사후
당사자의 권리포기는 가능함.

약사변호사, 손해배상, 의료기기법, 인허가법률자문, 행정소송, 특허심판소송, 영업비밀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